예 산 총 칙

202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6,015,544	15,480,466
일반회계	461,473,142	13,844,194
특별회계	54,542,402	1,636,272
기타특별회계	54,542,402	1,636,272
상수도 특별회계	15,544,976	466,349
수질개선 특별회계	29,910,689	897,32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6,411	11,5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00,177	24,005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4,564,633	136,939
주차장 특별회계	826,000	24,780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2,509,516	75,28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50,195천원(일반예비비 1,206,09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44,10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7,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